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79,635,851	5,389,076
일반회계	166,224,869	4,986,746
특별회계	13,410,982	402,329
공기업특별회계	7,162,472	214,874
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7,162,472	214,874
기타특별회계	6,248,510	187,455
상수도특별회계	5,642,360	169,271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04,890	3,147
주차장사업특별회계	497,070	14,912
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	4,190	126

제 2 조 세입?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?세출 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579,74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」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